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07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김종양 · 박형수 · 김성원
고동진 · 정동만 · 이성권
서천호 · 한기호 · 박준태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① (생략)	제7조(계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 <u>. 이 경우 사전심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및 업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